

“미래 교육 전환과 교육현장 선도” 를 위한 서울교육대학교-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 현장과 미래 교육의 변화·대응 모델을 상호협력하여 개발·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초등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인적·물적 자원을 교류하고, 상호 협력을 통한 예비 교원의 현장 수요 대응과 교육현장의 미래 교육 역량 및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1.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예비교원 교육활동 운영 지원
2.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·물적자원 교류 등 상호 간 협력망 구축
3.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대응 관련 예비교원 및 교육현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·지원
4. 교육 현장과 미래 교육의 변화 및 수요 대응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 운영·지원
5. 기타 상호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지원

제3조 (책임과 의무)

1.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2.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
3. 양 기관은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 (협약해지)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2. 협약 당사자 간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
3. 협약 당사자 각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4. 협약 해지의 경우 협약 당사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다.

제5조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활동을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이 협약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6조 (협약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7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. 다만,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양 기관은 위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,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7월 4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 장 임채성

임채성



서울특별시
강남서초교육지원청
교육장 함혜성

함혜성